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6호 2024. 3. 8.(금요일)

고 시

○ 하동군 제2024-2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 하동군 제2024-3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5
○ 하동군 제2024-33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하동읍 신기리 483, 지에스*)	6
○ 하동군 제2024-3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7
○ 하동군 제2024-38호	하동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9
○ 하동군 제2024-41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1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324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하동군 공고 제2024-386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일반공고

○ 하동군 고전면 공고 제2024-6호	2024년 고전면 양배수장 시설물관리자	41	
○ 하동군 공고 제2024-315호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48
○ 하동군 공고 제2024-335호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24-373호	소하천 점·사용허가 공고(하동읍 두곡리 753-1, 김*)	55	
○ 하동군 공고 제2024-382호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계획	공고	56
○ 하동군 공고 제2024-387호	2024년 청년 나눔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입주희망자 공모	공고	61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4 - 2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75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50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75	20240215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묵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2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83	20240215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12-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49	20240215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17-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제길 96-21	20240215	옛날 마을 뒷편에 큰 서당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51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98	20240215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셨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겨 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3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2. 15.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24-00002
- 허가연월일 : 2024. 2. 15.
- 점·사용의 목적 : 농업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진교면 고룡리 863, 100㎡
(인근지번 : 진교면 고룡리 697)
- 점·사용의 기간 : 2024. 02. 15. ~ 2029. 02. 14.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김행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2. 19.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24-00003
- 허가연월일 : 2024. 2. 19.
- 점·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읍 신기리 483, 10.6㎡
- 점·사용의 기간 : 2024. 2. 19. ~ 2029. 2. 18.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지에스이(주)

하동군 고시 제2024 - 3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경서대로 624-8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646-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경서대로 624-8	20240228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54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208-21	20240228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하동군 고시 제2024-3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24. 3. 4.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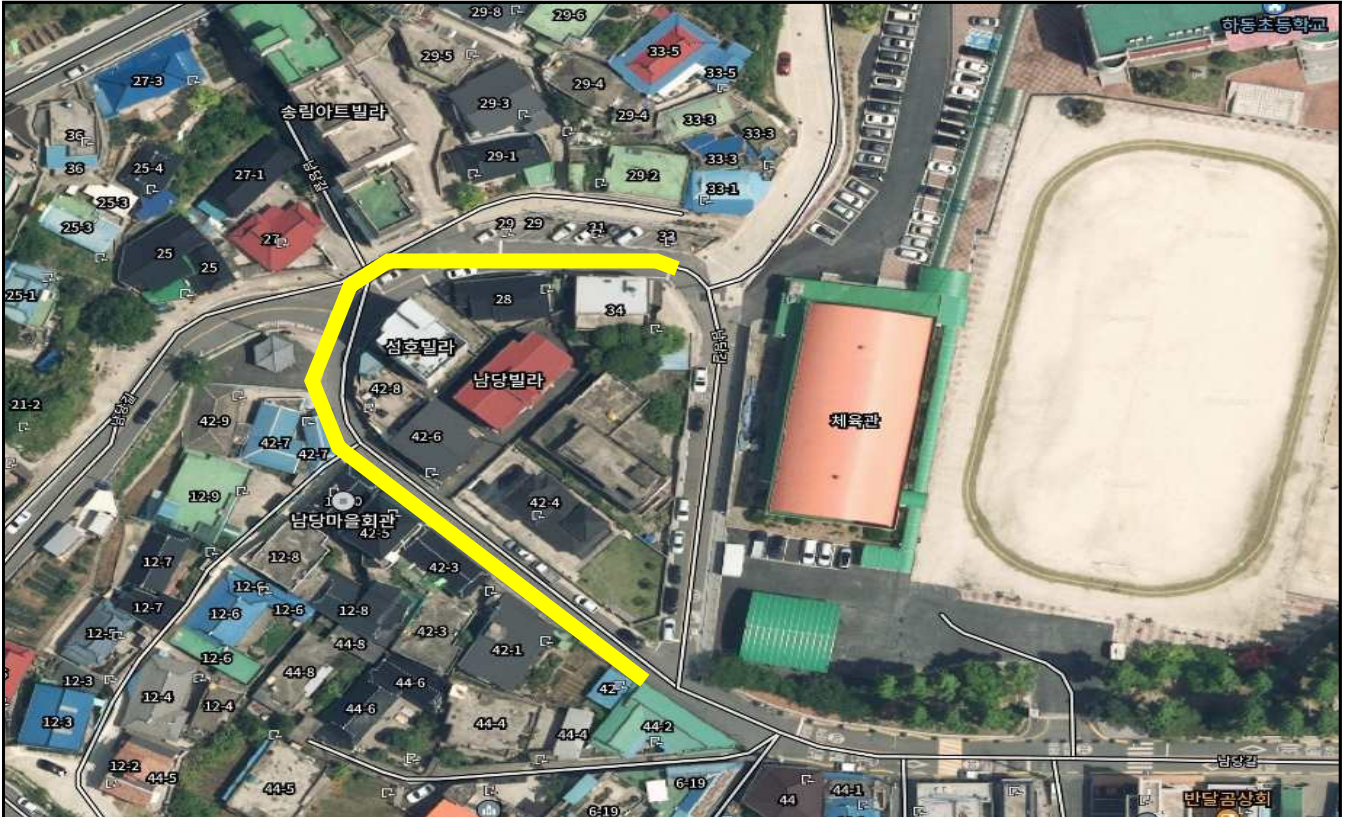
-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사실을 알려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위 치	상 세 위 치		비 고
	시점	종점	
하동읍 남당마을	광평리 231-2번지	광평리 306-2번지	L=160m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 건설과 도로 (☎055-880-2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위치



사진설명

하동읍 남당마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간(L=160m)

하동군 고시 제2024-41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5.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10225	35-10-00.6746	127-41-28.9200	중부	285824.90	262985.73	216.490	악양면 입석리 산52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226	35-09-59.1938	127-41-31.3823	중부	285779.70	263048.36	200.616	악양면 입석리 산52-3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227	35-09-56.6433	127-41-32.5355	중부	285701.30	263078.09	182.083	악양면 입석리 산50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228	35-10-31.0082	127-52-26.4372	중부	286890.68	279617.34	126.302	옥종면 양구리 산79-6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229	35-10-31.9910	127-52-24.5784	중부	286920.55	279570.03	128.882	옥종면 양구리 산79-6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10230	35-10-31.7603	127-52-21.1934	중부	286912.69	279484.44	129.013	옥종면 청룡리 산2-7	2024.02.0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1	35-10- 32.058 6	127-52 -18.691 6	중부	286921 .33	279421 .05	130.64 4	옥종면 청룡리 544	2024.02. 0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2	35-10- 35.930 2	127-52 -14.177 3	중부	287039 .65	279305 .78	124.25 4	옥종면 청룡리 530	2024.02. 0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3	35-10- 37.930 9	127-52 -16.433 0	중부	287101 .81	279362 .31	115.38 3	옥종면 청룡리 1046	2024.02. 0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4	35-10- 41.958 9	127-52 -17.090 4	중부	287226 .09	279377 .86	106.37 2	옥종면 청룡리 475-1	2024.02. 01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5	35-10- 28.261 5	127-38 -39.266 7	중부	286646 .26	258686 .84	100.50 1	화개면 덕은리 산22	2024.02.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6	35-10- 25.222 1	127-38 -41.305 1	중부	286552 .93	258739 .03	82.202	화개면 덕은리 100-1	2024.02.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7	35-10- 23.954 0	127-38 -41.192 9	중부	286513 .83	258736 .44	71.810	화개면 덕은리 950	2024.02. 0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8	35-04- 18.204 2	127-44 -52.135 1	중부	275307 .74	268207 .73	19.829	하동읍 읍내리 452-5	2024.02. 13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3 9	35-04- 18.456 5	127-44 -54.270 4	중부	275315 .92	268261 .77	30.561	하동읍 읍내리 452-5	2024.02. 1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0	35-04- 17.759 0	127-44 -55.898 2	중부	275294 .73	268303 .18	29.681	하동읍 읍내리 401-18	2024.02. 1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1	35-03- 33.860 7	127-47 -02.103 5	중부	273966 .45	271511 .41	8.885	적량면 고절리 1188-9	2024.02. 13	맨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2	35-03- 32.871 9	127-49 -07.603 7	중부	273961 .53	274691 .88	95.911	고전면 성천리 157	2024.02. 1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3	35-03- 31.441 5	127-49 -10.050 9	중부	273917 .95	274754 .26	88.519	고전면 성천리 119-1	2024.02. 1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24	35-03-	127-49	중부	273838	274773	89.108	고전면 성천리 127	2024.02.	기타	세계측

점	4	28.851 5	-10.786 9		.29	.56			15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5	35-09- 00.564 8	127-43 -16.144 7	중부	283991 .68	265712 .68	121.30 1	악양면 신성리 245	2024.02. 1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6	35-09- 00.125 4	127-43 -18.183 4	중부	283978 .51	265764 .38	128.10 8	악양면 신성리 257	2024.02. 1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7	35-09- 00.162 5	127-43 -19.322 3	중부	283979 .86	265793 .20	133.73 9	악양면 신성리 257-1	2024.02. 15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8	35-06- 10.557 9	127-45 -57.828 5	중부	278782 .91	269845 .56	89.503	적량면 우계리 538-2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4 9	35-06- 09.621 6	127-46 -00.260 2	중부	278754 .53	269907 .37	91.159	적량면 우계리 산154-5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0	35-06- 08.308 2	127-46 -02.099 6	중부	278714 .42	269954 .26	87.442	적량면 우계리 855-1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1	35-04- 09.331 2	127-45 -50.599 2	중부	275045 .52	269691 .10	9.242	적량면 동산리 산285-3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2	35-04- 14.212 4	127-45 -45.588 4	중부	275194 .98	269562 .99	14.578	하동읍 비파리 875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3	35-02- 27.313 5	127-46 -50.928 8	중부	271913 .37	271244 .29	42.256	하동읍 목도리 175-1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4	35-02- 26.490 2	127-46 -51.642 5	중부	27188 8.14	27126 2.58	40.830	하동읍 목도리 165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5	35-02- 23.766 1	127-46 -52.067 0	중부	27180 4.27	27127 4.00	40.796	하동읍 목도리 150-2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6	35-06- 32.567 9	127-42 -04.314 2	중부	27941 7.67	26392 6.62	26.326	하동읍 흥룡리 1195-4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7	35-06- 31.297	127-42 -02.617	중부	27937 8.21	26388 3.93	20.535	하동읍 흥룡리 산173-1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8	35-06- 30.051 6	127-42 -02.108 2	중부	27933 9.73	26387 1.30	13.601	하동읍 흥룡리 1201-2	2024.02. 1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5 9	35-09- 09.166 7	127-42 -36.225 9	중부	28424 9.51	26470 0.36	30.964	악양면 신성리 1233	2024.02.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0	35-09- 06.381 6	127-42 -35.417 8	중부	28416 3.53	26468 0.52	29.899	악양면 신대리 620	2024.02.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1	35-09- 03.718 8	127-42 -36.436 4	중부	284081 .65	264706 .89	31.448	악양면 신대리 620	2024.02. 19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2	35-04- 08.766 7	127-45 -04.710 7	중부	275019 .29	268528 .54	4.131	하동읍 읍내리 203-1	2024.02.2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3	35-04- 05.784 6	127-45 -02.379 3	중부	274926 .94	268470 .17	3.953	하동읍 읍내리 203-1	2024.02.2 2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4	35-04- 02.928 8	127-44 -59.947 7	중부	274838 .47	268409 .22	6.118	하동읍 읍내리 222-21	2024.02.2 2	맨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5	35-02- 11.646 2	127-46 -55.400 1	중부	271431 .42	271361 .41	2.399	하동읍 목도리 22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6	35-02- 15.705 5	127-47 -02.234 6	중부	271557 .88	271533 .66	2.317	하동읍 목도리 29-1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7	35-02- 09.434 5	127-46 -57.333 7	중부	271363 .65	271410 .95	1.692	하동읍 목도리 22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8	35-00- 28.661 3	127-48 -33.357 8	중부	268277 .43	273870 .11	25.672	고전면 대덕리 716-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6 9	35-00- 30.744 1	127-48 -36.435 4	중부	268342 .25	273947 .62	19.602	고전면 대덕리 716-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0	35-00- 31.275 4	127-48 -39.762 9	중부	268359 .31	274031 .86	15.021	고전면 대덕리 716-2	2024.02.2 3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1	35-04- 53.545 9	127-44 -13.615 8	중부	276389 .63	267223 .74	5.671	하동읍 두곡리 753-1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2	35-04- 54.280 6	127-44 -15.786 1	중부	276412 .68	267278 .55	6.042	하동읍 두곡리 754-1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3	35-03- 34.564 5	127-45 -56.786 9	중부	273975 .28	269856 .11	9.879	하동읍 신기리 401-65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4	35-03- 35.007 1	127-45 -56.525 5	중부	273988 .87	269849 .38	9.854	하동읍 신기리 401-60	2024.02.2 6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5	35-03- 34.080 7	127-45 -55.423 3	중부	273960 .10	269821 .67	15.914	하동읍 신기리 397-5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6	35-03- 32.301 8	127-46 -00.849 8	중부	273906 .34	269959 .60	22.477	하동읍 신기리 401-50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7	35-03- 30.618 8	127-46 -04.779 8	중부	273855 .24	270059 .59	27.885	하동읍 신기리 333	2024.02.2 6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8	35-13- 55.267 8	127-38 -49.264 4	중부	293027 .53	258898 .29	135.47 9	화개면 운수리 327-1	2024.02.2 7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7 9	35-13- 53.077 7	127-38 -50.083 6	중부	292960 .17	258919 .45	134.30 6	화개면 운수리 산98	2024.02.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0	35-13- 53.980 4	127-38 -51.993 3	중부	292988 .31	258967 .56	138.11 1	화개면 운수리 862	2024.02.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1	35-10- 21.589 5	127-42 -04.525 4	중부	286475 .77	263882 .25	213.75 1	악양면 정서리 산69	2024.02.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2	35-10- 19.772 2	127-42 -05.905 4	중부	286420 .01	263917 .57	222.18 7	악양면 정서리 산65	2024.02.2 7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3	35-10- 19.682 2	127-42 -03.555 4	중부	286416 .82	263858 .11	224.39 1	악양면 정서리 산69	2024.02.2 7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W1028	35-02-	127-46	중부	272895	270912	5.516	하동읍 신기리 103-112	2024.02.2	철재	세계측

점	4	59.272 0	-38.150 9		.74	.75			8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5	35-02- 57.921 2	127-46 -39.939 2	중부	272854 .46	270958 .40	4.830	하동읍 신기리 103-164	2024.02.2 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6	35-02- 59.349 6	127-46 -41.915 0	중부	272898 .88	271008 .13	4.186	하동읍 신기리 103-175	2024.02.2 8	철재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7	35-09- 38.573 9	127-42 -33.879 7	중부	285155 .36	264634 .52	39.564	악양면 정서리 292-3	2024.02.2 8	기타	세계측 지계
지적도근 점	W1028 8	35-09- 36.175 7	127-42 -36.244 8	중부	285081 .88	264694 .90	33.026	악양면 정서리 296-3	2024.02.2 8	철재	세계측 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공고 제324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

- 1)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감면사항 삭제

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2)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안 11조의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272, FAX 880-2279, e-mail(huiya@korea.kr)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삭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3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6. 29.>

- 1. 삭제 <개정 2021. 7. 2.>
- 2. 삭제 <개정 2021. 7. 2.>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1. 7. 2.>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개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본조신설 2020. 7. 7.>

제11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삭 제>

2021. 7. 2., 2022. 6. 29.>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1)자
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인
법인 및 4)그 밖의 법인

붙임

관계법령(발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6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 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 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장을 말한다.
-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 ·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 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 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 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 지
 -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 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386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하동군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지명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민간 위원수를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
- 나.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 (안 제2조)
- 다.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위원 해촉 기준 신설 (안 제3조)
- 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 880-2122, FAX 880-2078, e-mail(bobcsy@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명위원회업무 담당주사”를 “지명업무 담당으”로 한다.

1. 지명업무 관련 부서장

제3조제1항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제6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u>3명 이상</u>으로 한다.</p> <p>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互選)</u>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관계 부서 국·소 관·과장</u></p> <p>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 3명 이상</u></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p>	<p>제2조(구성) ① ----- ----- <u>10명</u> ----- ----- . <u>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u></p> <p>② 위원장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u>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u></p> <p>③ ----- ----- .</p> <p>1. <u>지명업무 관련 부서장</u></p> <p>2 ----- ----- <u>사람</u></p> <p>3 ----- .</p>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하동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지명위원회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사람

<삭 제>

⑤ -----지명업무 담당으-----

-----.

제3조(임기) ① -----

----- 한
차례만 연임-----.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 2.·3. (생략)

제6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
-----.

제4조(기능) -----
----- 심의·의결한다.

-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 2.·3.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칙으로 정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 련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3. 6.11. 시행)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6.11. 시행)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고전면 공고 제2024-6호

2024년 고전면 양·배수장 시설물관리자 채용 공고

2024년 고전면 양·배수장 시설물관리자 채용에 따른 공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고 전 면 장

1 채용내용

○ 채용내용

분야별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배수장 관리	1명	월진배수장	○ 양·배수장 유지 및 관리 ○ 종합행정업무 지원	2024. 3. 4. ~ 2024. 12. 31.	
	1명	전도배수장		2024. 4. 1. ~ 2024. 10. 31.	
	1명	소량산양수장			

* 근무기간은 예산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만 70세 이하
 - * 해당 연령은 70세까지로 한다. 다만 면장 및 이장이 신체건강상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추천한자는 71세 이상도 가능
- 공고일 현재 고전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 참여자는 참여기간 동안 고전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 인근마을 및 지역실정에 능통한 자 우대
- 우대조건 : 배수장 유경험자, 양·배수장 기계시설 운영을 위한 자격증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불가)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로 자가 운송수단(차량, 오토바이) 소유한자
- 고전면에서 필요시 읍면의 종합행정업무 수행 가능한 자(풀베기, 위험목 제거 등)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근로조건

가. 근로조건

- 근무기간
 - 월진배수장, 전도배수장 : 2024. 3. 4. ~ 2024. 12. 31.
 - 소량산양수장 : 2024. 4. 1. ~ 2024. 10. 31.
- * 예산등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역단가: 78,880원/일(주차, 월차수당 지급)
 -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은 지급 임금에서 공제)
- 근무시간 : 1일(9시 ~ 18시)
 - * 근무시간은 기상재해 유무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휴식시간 : 1시간(12시 ~ 13시)
- 기타 근무조건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나. 주요임무

- 양·배수장 펌프, 변전설비 및 주변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필요시 작동
- 배수로의 수초 및 오물제거 등 주변환경 청결 및 배수설비 조작
- 배수로에 떠내려온 각종 이물질 제거 및 홍수 등의 긴급한 상황시 신속한 배수점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호우특보시 기계설비 긴급 점검 및 양·배수장 대기
- 양·배수장 근무일지 작성
- 양·배수장 관리 및 행정에서 필요한 업무 사항 이행

다. 준수 의무

- 근무 중 음주금지(적발시 단계적 조치 후 해임)
- 호우특보 및 태풍내습시 면장 및 산업계장 지시 없이 현장이탈 금지
- 관리기구, 비품외의 불필요한 물품보관·적치 금지
- 각종 기기 점검 후 조작
- 기기이상 발견시 선 전원 차단 후 보고

※ 위 준수사항 3회 이상 위반시 시설물 관리자 해임 및 재선임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2. 16.(금) ~ 2024. 2. 27.(화)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고전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차량(이륜차)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5 시험일정 및 선발방법

- 서류전형 : 합격자에 한해 전화 개별 통지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 2024. 2. 28.(수)(예정)
 - 장소 : 고전면사무소 회의실(2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9.(목) 개별통지
 - 심사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 채용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 및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관련사항 문의 : 하동군 고전면 산업경제담당 (055-880-6182)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나. 생년월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다. 연 령 : 2024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마. 경 력 : 양·배수장 운영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 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 바.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첨부 <1>

양·배수장 시설물 관리자 응시원서

신청근무지				응시 번호	※
성 명		나이(만)	세		
생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핸 드 폰			
<p>위 본인은 2024 양·배수장 시설물관리자 모집에 응시코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고전면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cm×4cm) (반명합판)</p>

양·배수장 시설물 관리자 응시표

신청근무지		응시번호	※
성 명		시험일자 시험장소	해당읍면 선택사항
생 년 월 일			
<p>2024년 월 일</p> <p>고 전 면 장</p>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 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4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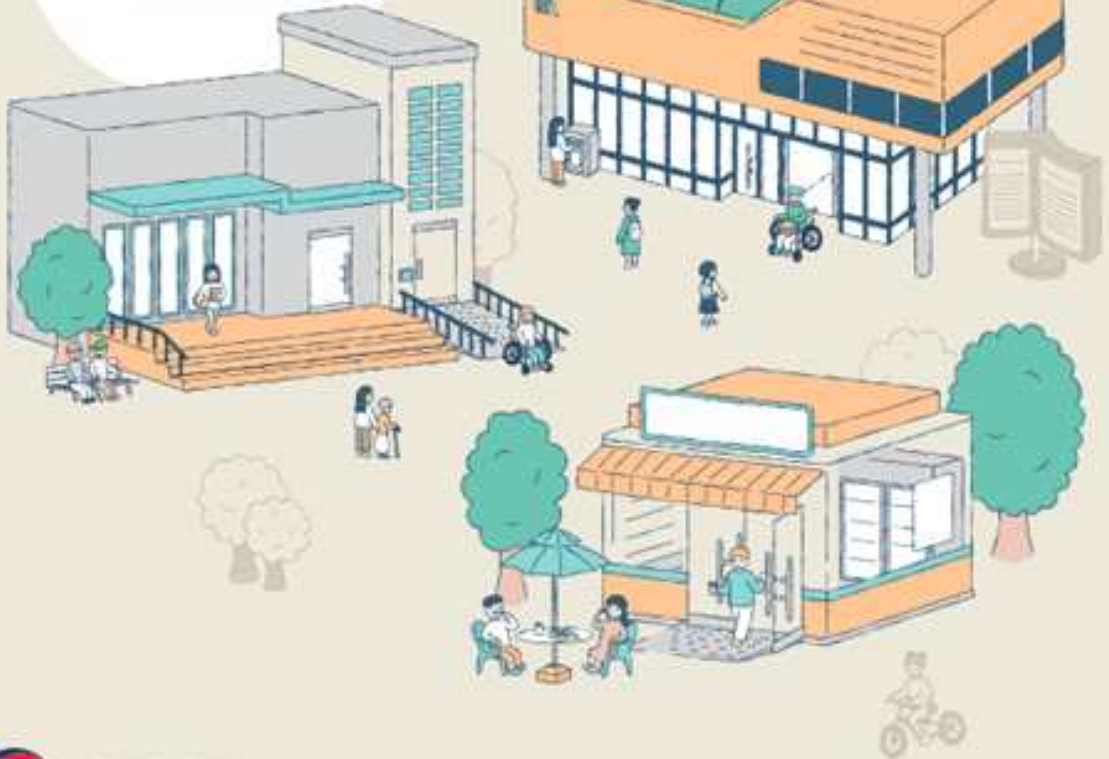
고전면장 귀하

www.mois.go.kr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

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01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 개요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 **사업내용**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 ▶ **지원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정례시설

-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02 민간다중이용건축물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 추진절차

- ① 예산액 국비 1,467백만원*
* 30개소 × 489백만원 × 10%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② 사업기간 - '23.12.31.
- ③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지방비 부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최소 10% 이상 확보토록 권장
- ④ 교부·관리 행정안전부
- ⑤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⑥ 추진절차 수요 확보 → 사업실시(선금지급) → 사업완료(잔금지급)





사업 문의처

○ 행정안전부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044-205-5199 / ldi0703@korea.kr

○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 055-771-4888 / seismiccerti@kalis.go.kr

○ 지자체

시·도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서울	02-2133-6988
부산	051-888-2964
대구	053-803-4552
인천	032-440-3369
광주	062-613-2684
대전	042-270-5974
울산	052-229-4085
세종	044-300-3225
경기	031-8008-8442
강원	033-249-3835
충북	043-220-2465
충남	041-635-3254
전북	063-280-4379
전남	061-286-3724
경북	054-880-2367
경남	055-211-2834
제주	064-710-3948

붙 임

‘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식

민간건축물 수요조사 결과(‘24년 사업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지역	건물명	층수	연면적(㎡)	용도	허가일	준공일	내진성능평가여부*
총계								
소계								
1	하동군	○○교회(하동읍 ○○길 00)						○
2								X
								잘 모름

* 내진성능평가 여부는 ○, X로 표기

※ ○인 경우, 내진성능평가 결과(내진성능확보 유무, 평가일, 평가비용 등 별도 추가조사 요망)

** (예시) 실제 조사한 금액명시 단, 공사비용을 모르는 경우 내진공사비 489,000천원 적용

하동군 공고 제2024-335호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공청회 개최 공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1. 공청회 개요

- 가. 추진근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개최목적 :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시행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다. 일 시 : 2024. 3. 5.(화) 14:00
라. 장 소 : 하동군 하동읍 하동영화관 3층 다목적실(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2.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주요내용

- 가. 자율상권구역 정의 및 범위
나. 하동군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

3. 기타사항

- 가. 의견제출 : 공고기간 중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시거나 개최 당일 또는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4. 3. 5.(화) ~ 3. 7.(목) 18:00까지
 - 의견제출방법
 - 우편접수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E-mail : hangoon89@korea.kr
 - 의견서식 : 하동군 홈페이지 내 공고 페이지 붙임서식
- 나. 기타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055-880-28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사업명 제목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하동군 자율상권구역 지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4-373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김권	주소	하동군 진교면 만다리길 130-3
소하천명		울동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읍 두곡리 753-1		
	면적	1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24. 03. 04. ~ 2029. 03. 03.		
	목적 및 사유	부지조성(우량농지사업) 따른 배수관 매설		

하동군 공고 제2024-382호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불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06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 업 명 :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
- 다.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16번지 일원
- 라. 사 업 규 모 : 어울림마당 조성, 섬진강 풍류길 조성
- 마. 사 업 기 간 : 2021. ~ 2025.

2. 보상대상 : 토지(6필지, 1,818㎡)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4.03.06. ~ 2024.03.21.(15일간)

4. 열람기간 : 2024.03.06. ~ 2024.03.21.(15일간)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과(☎ 055-880-2236)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과(☎ 055-880-2236)

[토지 및 건물 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16	대	458		제*
2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22-2	전	331		조현*
3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22-4	대	152		조성*
4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22-6	대	161		한순*
5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21-4	대	132		오군*
6	토지	하동읍 읍내리	1022-1	대	584		조현*
		합계			1,818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24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 소유자(공동소유자 포함) 확인란에는 도장 날인만 가능하고, 서명 및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 7

임차인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하동 관내 공실(空室)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4. 3. 6.

하 동 군 수

1. 신청기간 : 2024. 3. 6. ~ 3. 14.(9일간)
2. 신청자격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 :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24년도 기준, 출생년도 1979년 ~ 2005년 해당)

순 위	입 주 자 격	증 병 서 류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직전년도 소득 기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재산세) ※ 직전 1개년 전국기준 재산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 지원제외 대상 : 임대인의 직계가족
4.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입주자격 순위(1·2·3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 임대주택 수량에 따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임차인 확정

○ 결과발표 : 2024. 3. 18.(월) 13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5. 입주가능(예정)일 : 2024. 5. 00.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6.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 대 현 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수	면적(m ²)	보증금	월세	
하동군 관리카드 NO. 2024-1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09	1	목조	1	-	27	200	15	
NO. 2024-2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15-2	1	블록/ 슬레이 트	1	-	39	100	15	입구 측 하얀 벽 집
		1	연와조	1	-	63	200	17.5	중간 벽돌 집
		1	목조/ 슬레이 트	1	-	15	100	12.5	왼쪽 벽돌 집

7.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차인 입주일로부터 산정함.
- 임차인 신청자 중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 > 연령(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8.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9. 입주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공통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읍·면사무소,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최근 1개년 소득 기준 ※ 6.30일 이전인 경우 신청일의 직직전 귀속연도까 지만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	세무서, 홈택스 (인터넷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읍·면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재산세) ※ 직전 1개년 전국 기준 재산세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방문발급만 발급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직전 1개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 기준
- (방문 발급) 군청 재정관리과 방문(기혼자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관할지자체 단체(전체, 전체 선택) / 과세연도(직전 1개년 선택) / 세목선택(재산세 선택) / 사용목적(청년 나눔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출용 기재)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서식 8

입주 신청서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 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본인			
1			
2			
3			
4			
5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공모 공고 참고

위 신청인은 하동군에서 공급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4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